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의뢰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김광택
건명 : 김문길 소유물(2025타경695)
감정평가서 번호 : 하나 250522-12-202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
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하나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HANA Appraisal & Advisory Co.,Ltd.

Tel : 055-762-2200 Fax : 055-762-2303

경남 진주시 사들로 16 이엘빌딩 3층 301호(충무공동)

(부동산) 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주)하나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감정평가사

지사장

구준수

(인)

정준규

(인)

감정평가액	일억칠천이백오십만칠천원정 (₩172,507,000.-)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김광택		감정평가 목적	경매		
제출처	경매5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문길 (2025타경 695)		감정평가조건	-		
물건목록 표시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 05. 26	2025. 05. 23 ~ 2025. 05. 26	2025. 05. 26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별	면적 또는 수량(m ²)	종별	면적 또는 수량(m ²)	단가	금액
	토지	359	토지	359	325,000	116,675,000
	건물	79.26	건물	79.26	700,000	55,482,000
	제시외건물	(2.5)	제시외건물	2.5	140,000	350,000
		이	하	여	백	
	합계					₩172,507,0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I.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의뢰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 건임.

II. 감정평가의 기준 및 감정평가조건

1. 감정평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

본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제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기준시점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5월 26일임.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물리적 현황 및 시장분석 등을 위한 실지조사는 2025년 5월 23일 ~ 2025년 5월 26일에 실시하였음.

4. 감정평가조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III. 기타 참고사항

- ① 본건 토지 기호(1)은 일부 '타인점유'이고, 일부는 현황'구거'로 이용중인 바,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면적의 확정 등은 측량이 요구되오니, 경매시 유의하시기 바람.
- ② 본건 토지 기호(1) 일부 지상에 정원수(석류나무 등) 수주, 블록축대, 대문 및 담장 등의 부합물은 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해당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③ 본건 토지 기호(1)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부합물 및 종물 성질의 제시외건물(기호 ㄱ)은 개략적으로 실측하였으며, 구조, 용도, 사용자재, 시공정도, 부대설비,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미등재 건물인 바 관찰감가하였으며,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에 별 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경매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 ④ 본건 토지 기호(1)은 인접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인은 지적측량이 요구되오니 경매시 참조하시기 바람.
- ⑤ 본건 건물 기호(2) 및 주변에 설치된 계단, 석재데크(하단부 창고 포함) 등의 부합물은 해당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토지 · 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624-3	대	계획관리지역	359	359	325,000	116,675,000	일부 타인점유, 구거감안
2	상동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781번길 45-6 (제시외	624-3 위 지상 건물)	단독주택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79.26	79.26	700,000	55,482,000	1,500,000 x 21/45
ㄱ	상동	624-3 지상	화장실	조적조 함석지붕 단층	(2.5)	2.5	140,000	350,000	300,000 x 21/45 관찰감가
합 계								₩172,507,000.-	
					이	하	여	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의 방법은 대상물건의 제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등이 있음.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1) 토지의 평가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비교·검토하였음.

(2) 건물의 평가

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 구조, 사용자재, 시공상태, 마감재의 상태, 부대설비, 용도,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해 원가법 외의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주된 방법 외 다른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비교·검토는 생략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I.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감정평가액 = 토지감정평가액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 + 건물감정평가액 (원가법)

1. 토지 감정평가액

(1) 대상 토지의 현황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m ²)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5년 개별공시지가 (원/m ²)
1	문산읍 상문리 624-3	359	대	단독주택	계획관리	세로(가)	사다리 완경사지	106,900

(2) 토지 감정평가 시 고려사항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3)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가.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이 있는 아래의 표준지를 선정함.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5년 공시지가 (원/㎡)	비고
A	문산읍 상문리 610-7	334	대	단독주택	계획관리	세각(가)	사다리 평지	122,700	-

나.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표준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비 고
#A 계획관리 지역	0.493	경상남도 진주시 (25.01.01~25.05.26) 2025.01.01 ~ 2025.04.30 : 0.410 2025.04.01 ~ 2025.04.30 : 0.095 (1 + 0.00410) * (1 + 0.00095 * 26/30) ≒ 1.00493

※ 기준시점이 속한 월의 지가변동률은 미고시 상태인 경우, 최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다.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라. 개별요인 비교

■ 주택지대 [일련번호1 / 표준지A]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포장		
		보도		
접근 조건	교통시설 및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생활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계통 및 연속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환경 조건	일조 등 자연환경	일조, 통풍 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시설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0.89	본건이 획지조건(일부 타인점유 및 현황구거감안, 경사 및 접면도로 상태 등)에서 열세함.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방위, 고저 등	자루형 획지		
		방 위		
		고 저		
	접면도로 상태	경사지		
		각 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2면획지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3면획지		
기타 조건	기타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0.89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28) 및 대법원판례(2003다38207(2004.05.14선고), 2002두5054(2003.07.25선고))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나) 인근 토지의 가격수준

구 분	주위환경	도로조건	지가수준(원/㎡)	기타
인근 유사 토지	국도주변 농촌지대	세로변	300,000-350,000 내외	계획관리

본건 지역의 지가수준은 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다) 본건 평가사례

본건의 최근 3년 이내의 평가사례는 포착되지 아니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라) 인근 평가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토지 면적(m ²)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기준시점	평가목적	토지단가 (원/m ²)	비고
(1)	문산읍 상문리 60*-*	201	계획관리	대 주거기타	2024.06.07	법원경매	353,000	-
(2)	문산읍 상문리 63*	705	계획관리	대 주거나지	2025.05.23	법원경매	383,000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마) 인근 거래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이용상황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1	문산읍 상문리 20*-*	계획관리 대/상업기타	303,600,000원 (@ 452,459원/m ²)	2024.12.30 -	671m ² -	-
	의견	1)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2) 토지가격 : 303,600,000원 / 671m ² ≈ 452,459원/m ²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바)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

① 개요 및 산식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평가사례를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출함.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평가사례기준 표준지가격 (사례단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text{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② 보정치 산정

< 비교표준지 A >

평가사례 기준 표준지가격 (a)	사례단가 ¹⁾ (원/㎡)	시점 ²⁾ 수정	지역 ³⁾ 요인	개별 ⁴⁾ 요인	산출단가 ⁵⁾ (원/㎡)	격차율 (a/b)	보정치 결정
	353,000	1.01405	1.000	1.020	365,118		
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b)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⁵⁾ (원/㎡)	2.961	2.96
	122,700	1.00493	-	-	123,305		

¹⁾평가사례 : 비교표준지A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평가사례(1)을 선정함.

²⁾시점수정(2024.06.07 ~ 2025.05.26, 진주시 계획관리지역) : 1.405% (1.01405)

³⁾지역요인 : 비교표준지A는 평가사례(1) 인근지역에 소재하므로 지역요인 대등함.

⁴⁾개별요인 : 비교표준지A가 평가사례(1) 대비 획지조건(접면도로 상태 등)에서 우세함.

개별요인 비교치 (주택지대)						격차율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1.00	1.00	1.00	1.02	1.00	1.00	1.020

⁵⁾산출단가 : 원단위 미만 절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일련 번호	비교표준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m ²)	시산가액 (단가)(원/m ²)	비고
	일련 번호	공시지가 (원/m ²)							
1	A	122,700	1.00493	1.000	0.890	2.96	324,834	325,000	주택지대

※ 산출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4)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가. 비교거래사례 선정

거래사례 선정에 관한 의견	비교 거래사례
본건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사례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함.	#1

일련 번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이용상황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1	문산읍 상문리 20 ^{지-1}	계획관리 대/상업기타	303,600,000원 (@ 452,459원/m ²)	2024.12.30 -	671m ² -	-
	의견	1)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2) 토지가격 : 303,600,000원 / 671m ² ≒ 452,459원/m ²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사정보정

사정보정에 관한 의견	사정보정치
비교거래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	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다.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거래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거래사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비 고
#1 계획관리 지역	0.501	경상남도 진주시 (24.12.30~25.05.26) 2024.12.01 ~ 2024.12.31 : 0.121 2025.01.01 ~ 2025.04.30 : 0.410 2025.04.01 ~ 2025.04.30 : 0.095 $(1 + 0.00121 * 2/31) * (1 + 0.00410) * (1 + 0.00095 * 26/30)$ ≈ 1.00501

라.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마. 개별요인 비교

■ 주택지대 [일련번호1 / 거래사례#1]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0.83	본건이 가로조건(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등)에서 열세함.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교통시설 및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생활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환경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공급시설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0.89	본건이 획지조건(일부 타인점유 및 현황구거감안, 경사 및 접면도로 상태 등)에서 열세함.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 획지		
	방위, 고저 등	방 위		
		고 저		
		경사지		
	접면도로 상태	각 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0.739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일련 번호	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m ²)	시산가액 (단가)(원/m ²)
	일련 번호	토지단가 (원/m ²)						
1	#1	452,459	1.000	1.00501	1.000	0.739	336,042	336,000

※ 산출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5) 시산가액 조정 및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가. 토지 시산가액(단가) 검토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 (원/m ²)	거래사례비교법 (원/m ²)	비고
1	325,000	336,000	-

나.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객관성,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으로 평가단가를 결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2. 건물 감정평가액

(1) 대상 건물의 현황

일련 번호	규모	구조	용도	연면적(m ²)	사용승인일	건물 관리상태
2	1층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독주택	79.26	2000.10.05	중

부대설비 내역 등

※ 제반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의 부대설비와 계단, 석재데크(하단부 창고 포함) 등의 부합물 일체는 표준단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2) 건물 감정평가 시 고려사항

-

(3) 재조달원가 결정

일련 번호	구조	표준단가 (원/m ²)	보정단가 (원/m ²)	재조달원가 (원/m ²)	내용 년수	비고
2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1,500,000	표준단가 에 포함	1,500,000	45	1층 (단독주택)

※ 상기 단가는 '한국부동산연구원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을 참조하되 본건물의 신축년도, 건축자재, 동·유사 규모 및 용도의 신축가격, 시장에서 거래되는 동향 및 본 평가목적에 고려하여 표준단가를 결정하고, 기타 부대설비의 존재유무 및 이에 따른 보정단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한국부동산연구원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 (2024년 1월 기준)

분류번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 (원/㎡)	내용년수
01-01-02-09	일반주택	벽돌조/평지붕	3	1,501,000	45 (40~50)
01-01-02-09	일반주택	벽돌조/평지붕	4	1,277,000	45 (40~50)
01-01-03-09	일반주택	치장벽돌조/평지붕	3	1,598,000	45 (40~50)
01-01-03-09	일반주택	치장벽돌조/평지붕	4	1,381,000	45 (40~50)

(4) 감가수정 및 적용단가 결정

일련 번호	이용상황	재조달원가 (원/㎡)	내용 년수	경과년수		잔존 년수	잔가율	적용단가 (원/㎡)	비고
				실제	유효				
2	1층 (단독주택)	1,500,000	45	24	24	21	21/45	70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II.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 평가대상 부동산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제반 공법상의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목적 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감정평가액	토 지	116,675,000 원
	건 물	55,482,000 원
	제시외건물	350,000 원
	합 계	172,507,000 원

결정의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및 참고가격 자료(평가사례, 인근 부 동산 탐문조사에 의한 가격수준, 낙찰가율 통계분석 등)를 고려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감정평가액 및 원가법에 의한 건물 감정 평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상기 평가액의 합계액으로 대상부동 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	---

2. 기타 참고사항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소재 상이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국도주변 농촌지대로서, 농촌마을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완경사지내 자체지면 대체로 평탄한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물부지이며, 남서측 일부는 '타인점유' 및 현황'구거'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동측으로 약3미터폭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이는 본건 보다 다소 저지에 위치하여 현황은 본건으로 이어지는 약2.2미터폭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 경사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2015-02-12),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본건 토지의 남서측 일부는 '타인점유' 및 현황'구거' 상태이오니, 경매시 참고하시기 바람.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 | (2) 이용상태 | (3) 설비내역 |
|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건물의 구조

기호(2) :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벽돌치장쌓기,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일부 타일 마감 등,
 바닥 : 장판지,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새시 및 목재이중창 구조임.

(2) 이용상태

기호(2) :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제반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별첨 '개황도'상 도시된 기호(ㄱ)과 같이 소재하며, 구조, 규모, 이용상태 등으로 판단할 경우에 본건 토지의 사용 수익에 별 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경매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5) 공부와의 차이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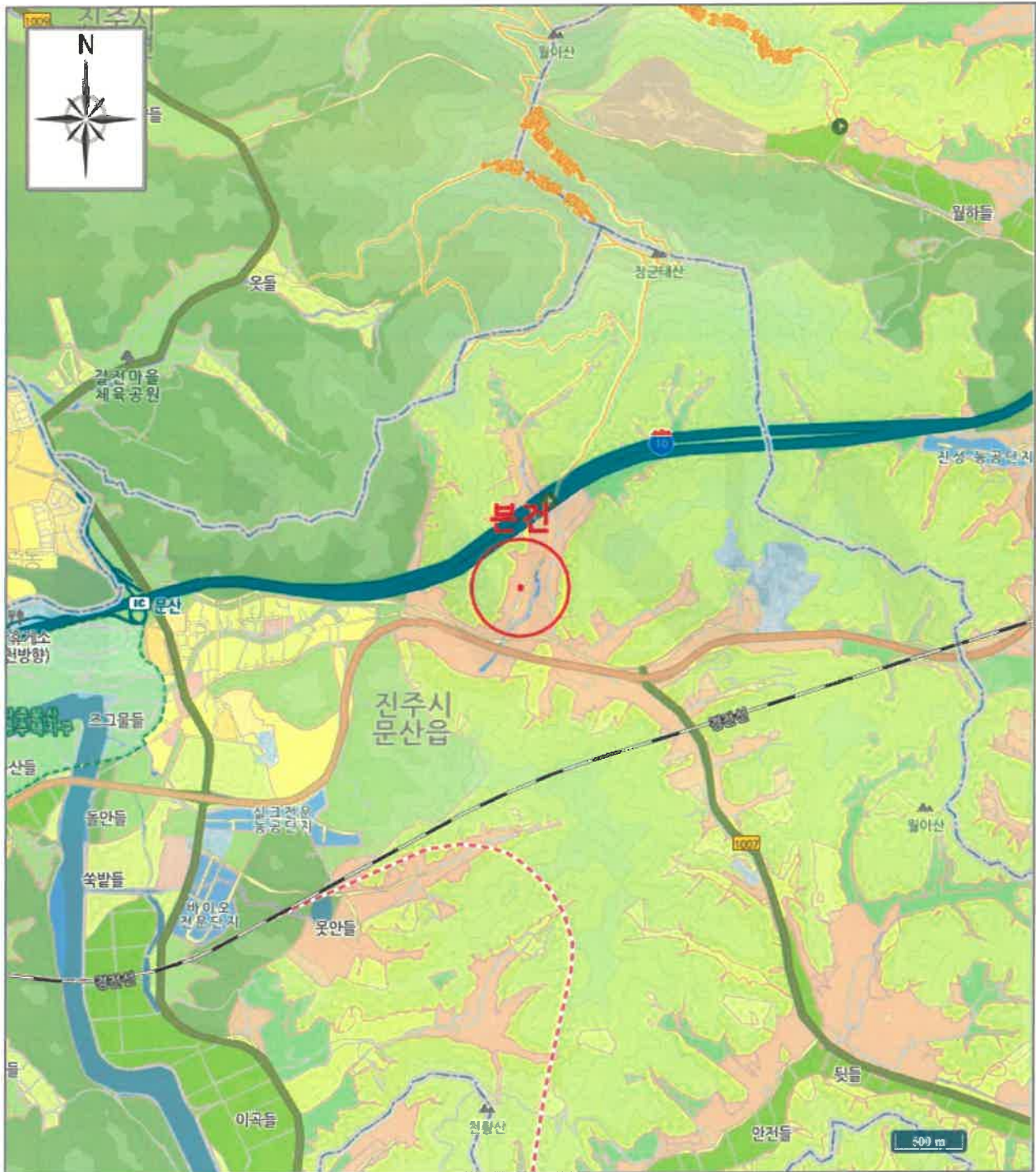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탐문조사되나, 상세한 사항은 미상임.

광역위치도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624-3



지 적 도

S : 1 /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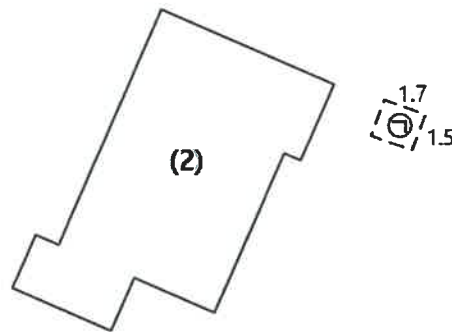


* 본 개황도는 현장조사에 의거 개략적으로 도시한 '참고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한 지적측량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범 례	평가대상토지	용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3층이상
	도로선	평가건물1층	평가제외건물
	도시계획선	평가건물2층	제시외건물

건물 개황도

S : 1 / 300



[면적산출근거]

기호(2) : 79.26㎡ (공부 79.26㎡)

[제시의 건물]

⊖ 조적조 함석지붕 단층, 화장실 : (1.7 x 1.5) ≈ 2.5㎡

사 진 용 지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624-3
-----	------------------------



본건(1,2) 및 주위 전경



기호(1) 일부 진입로, 축대, 담장 및 대문 등 전경

사 진 용 지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624-3



기호(1) 일부 전경



기호(1) 일부 `타인점유`부분 및 `현황`구거`부분 전경

사 진 용 지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624-3



기호(2) 전경



기호(2) 일부 전경

사 진 용 지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624-3



기호(2) 주변 데크(하단부 창고 등), 계단 등 전경



기호(2) 내부 전경

사 진 용 지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624-3



기호(ㄱ) 전경

문서번호 : 250522-12-202호

시행일자 : 2025. 05. 27

수 신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김광택

참 조 :

제 목 : 감 정 평 가 회 보

1. 우리 (주)하나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문서 2025.05.21자 귀 제 2025타경 695호로 의뢰하신『김문길 소유물』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별첨과 같이 회보합니다.

3. 우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행)에 따라 2010년 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오니 필요사항을 하단에 기재된 재무팀 팩스나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사항 : 사업자등록증사본, 담당자성명, 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별 첨 :	1. 감정평가서	1 부
	2. 청구서	1 부
	3. 공부서류	1 부 끝.

(주)하나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지 사 장 구 준 수



담당감정평가사 : 정준규

우편 52854 경남 진주시 사들로 16 이엘빌딩 3층 301호(충무공동)

TEL 055-762-2200 FAX 055-762-2303 <http://www.hgrea.co.kr>

(회계팀)TEL 055-762-2200 FAX 055-762-2303 EMAIL : hana06@empas.com

수수료 청구서

감정평가서번호 : 250522-12-20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김광택 귀하

의뢰번호 : 2025타경 695

사십팔만칠천삼백원정 (₩487,300.-)

2025-05-21 일자 귀 제 「 2025타경 695 」 호로 의뢰하신 「 김문길 소유물 」 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 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내역-

과목	금액	비고
가.평가수수료	307,805	(250,000+(122,507,000 x 11/10,000))x 0.8
나.여비	106,000	
토지조사비	-	【물건조사비】2동 x 10,000
물건조사비	20,000	
공부발급비	1,090	
임대차조사비	-	
기타 실비	9,000	
특별용역비	-	
소계	136,090	
수수료합계(공급가액)	443,000	* 1,000원미만절사
부가가치세(세액)	44,300	
총계	487,300	
기납부 착수금	-	
정산청구액	487,300	

※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입금시 입금자 명의를 감정서번호(250522-12-20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하나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사업자등록번호 : 613-85-12181

★계좌번호★

◆ 농협은행-진주시지부 : 805-17-002190

예금주 【 (주)하나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

(주)하나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지사장 구준수



(TEL : 055-762-2200 FAX : 055-762-2303)